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0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출)	발의일	심사경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27	정부	2025.04.22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0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 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41	황희 의원	2025.05.02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2.12)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8	한민수 의원	2025.12.12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6.0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 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 3.10.)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3.11.)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동일한 발사장소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함(안 제11조제2항).
- 나.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
구역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

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

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우주개발 진흥법」	발사안전구역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 ~ 8.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p> <p>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우주항공청</u>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u></p> <p>7.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p> <p>① ----- ----- ----- <u>우주항공청</u>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p> <p>1. 2. (현행과 같음)</p>

<신 설>

② ~ ⑤ (생략)

<신 설>

<신 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

<신 설>

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

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

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기관의-----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